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10. 26(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2. 10. 12

나. 제안자 : 시장

다. 회부일자 : 2012. 10. 15

라. 상정일자 : 2012. 10. 26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박덕순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I. 제안이유

- 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하고,
- 나.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 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다. 임원의 구성·직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제8조)
- 라. 연구원에 기금을 둘 수 있으며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함 (안 제10조 ~ 제11조)
- 마. 연구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2조)
- 바.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 경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인천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하고 그밖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2년10월 12일 제출하여 2012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본 조례의 취지(제정필요성)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여성가족분야 사업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연구·개발 전문기관 및 여성정책사업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할 여성가족연구원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근거 및 운영사항을 조례를 통해 마련하려는 것임.
- 우리시의 모델은 인천 여성문화회관에 인천여성정책센터의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보강한 기능 확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교육으로 인천의 여성사회교육을 선도하고 정책개발, 교육, 교류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여성정책 전문기관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음.

『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능전환 통합(안) 』

구분	시설 운영방식			
	현 행		기능확대 후	
	기관명	주요기능	기관명	주요기능
기능 통합	『인천여성문화회관』 (현·민간위탁 운영)	여성사회 교육사업	(가칭)인천여성가족연구원	여성사업+정책연구
	『인천여성정책센터』 (현 인발연 소속)	정책연구		

- 이를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천시 여성구조와 가족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에 적합한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며 독립된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 주요 내용

1) 안 제2조(설립)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는 것임.
- 이는 민법 제 32조에 명시된 설립근거에 의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참고2 : 설 립 근 거 】

○ 「민법」 제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안 제3조(사업의범위)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1호에서 11호까지로 규정하였음.

- 안 제9호에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여성문화회관의 건물은 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에 출연한 상태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 104조¹⁾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로 간주 할 수도 있음. 또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²⁾에 민간위탁과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어 기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1) 지방자치법 104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23조(관리·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여성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8-10-20><개정 2011-12-19>

②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및 서부여성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여성가족연구원으로 기능 확대후 역할 요약 】

구 분	여성문화회관 (현행)	여성가족연구원 (기능 확대후)
운 영 태	- 민간위탁 운영	- 비영리법인으로 독립 연구기관
사업목적 확 대	- 여성 문화활동, 사회교육사업 위주 -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족분야 정책연구 기능 수행 ·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 중앙부처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 - 여성 사회교육사업 : 현재 프로그램 일부 지속운영 ⇒ 정책연구·개발기능과 여성전용 시설 기능의 질적수준 제고
교육사업 질적변화	- 여성사회교육 사업이 주기능 (취미, 여가활용, 기술자격 취득 등) - 타 사회교육기관(여성복지관 등 사업소) 과 기능중복	- 전문가 교육 활성화 · 양성평등, 인권분야 등 여성가족 전문교육 강화 · 공무원 교육기능 수행(성별영향평가 분야등) - 특화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한 타 여성사회교육 성인지 정책교육 및 타기관과의 기능중복 지양
여 성 교류협력 사 업	- 학습동아리, 창업 동아리 지원	- 여성 네트워크 사업 강화 · 여성, 가족분야 전문 포럼 운영 · 국내외 여성전문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천여성의 역량 제고 - 여성 국제교류 사업 추진
재정확대 여 부	- 시 민간위탁금 보조	- 기존 사업비 범위내 운영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 사업의 내용이 여성문화회관(※붙임1)과 정책센터의 기능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인 결합이 되기 위해서 인천 여성관련 시설들이 기존에 실시해 오던 사회교육과 취업교육은 가급적 지양하고 성인지, 여성리더쉽, 성평등 등의 전문성 교육을 특화하는 것으로 보여짐.

3) 안 제6조~제8조(임원 등, 임원의직무, 이사회)

-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비상근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비상근일 경우에는 재단의 독립성 및 자율성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①항에 대표이사가 여성가족연구원을 대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대표이사는 연구원 및 여성문화회관을 대표한다고 명시한 것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³⁾를 감안해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

4) 안 제8조(이사회)

-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되며, 구성 및 운영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의 전단 규정은 이사회를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후단 규정에서 다시 구성과 운영을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안 제10조~제11조(기금, 운영재원 등)

- 연구원에 기금을 둘 수 있으며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연도별 세입비용(시출연금, 운영수입) 추계는 아래와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비 고
	계	'12	'13	'14	'15	'16	
총계	12,125	2,255	2,505	2,255	2,555	2,555	* 2014아시아 경기대회까지는 지원규모 동결
시출연금	6,600	1,150	1,400	1,150	1,450	1,450	
운영수입	5,525	1,105	1,105	1,105	1,105	1,105	

6) 안 제17조(운영규정)

-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함.
- 이사장도 이사회의 일원이므로 의결 후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3) 제21조(조직 구성) ① 제4조제3호와 제5호의 여성 관련 시설에는 해당 시설별로 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2-22>

『인천여성문화회관』 운영현황

♠ 시설개요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수탁자
		대지	건 물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부평 갈산동 375-1	6,861	8,467.42 (지하1, 지상4)	수영장, 강당, 다목적실, 컴퓨터실 등	YWCA

♠ 민간위탁 현황(2000. 10 ~ 현재)

구분	계약기간	위탁방식	선 정 법 인	
제1기	2000.10.1~2002.12.31	공개경쟁	(사)여성자원금고	
제2기~5기	2003.1.1~2011.12.31	공개경쟁	인천YWCA	인천YWCA에서 10년간 수탁
제6기	2012.1.1~2012.12.31	위탁기간연장	인천YWCA	

* 제6기 민간위탁은 기능확대 계획을 감안, 1년간 위탁기간 연장조치

♠ 주요사업 및 시설 운영예산 현황

구분	주요사업	시설 운영예산(백만원)			
		연도별	'10	'11	'12
주요사업 및 보조금 지원	- 여성사회교육, 문화복지 - 수영장 운영	계	2,099	1,971	1,855
		시비보조	750	845	750
		자체수입	1,349	1,126	1,105

타시도 여성가족연구기관 현황

기관형태	기 관 명	설립시기	초기 출연금	주 요 기 능
재단 법인 (8기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02.	초기출연금 : 100만원 건립비 : 338억 ➔ 시소유 건물 무상임대	연구, 교육, 프로그램개발, 건물위탁 운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8.	초기출연금 : 4억 (이외 운영비 약5억원 별도지급) ➔ 시소유 건물 무상임대	연구, 교육, 교류지원
	대구여성가족재단	2012. 7	초기출연금 5억 ➔ 대구종합복지관 시설 무상사용	연구
	광주여성재단	2011. 6	초기출연금 : 16억, 기금 : 10억 (기금목표액 : 100억)	연구, 교육, 교류협력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2005.	초기출연금 : 5천만원 건립비 : 신축건물아님 ➔ 임대비 도지원(행정동우회 건물)	연구, 교육, 프로그램개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997.	초기출연금 : 4억 (이외 운영비 별도 지급) ➔ 도소유 건물 무상임대	연구, 교육, 프로그램개발 시설 운영
	전남여성플라자	2009.	초기출연금 : 5천만원 건립비 : 191억 ➔ 도소유 건물 무상임대	연구, 교육, 문화프로그램 시설 운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997.	초기출연금 : 4억 ➔ 독립건물 없음 (경북테크노파크 내 설치)	연구, 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원내 센터 (6기관)	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	2004.		연구, 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기관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2010.		연구, 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기관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2006.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2002.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2005.		연구, 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기관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2005.		연구
도사업소 (2기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2005.		연구, 교육
	충북여성발전센터	2004.		연구, 교육

* 최근 설립된 연구재단 : 광주여성재단(2011. 6), 대구여성가족재단(2012. 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박승희, 신현환, 제갈원영, 박순남, 신동수, 강병수 위원
 - 여성가족연구원의 명칭을 볼때 좀 더 포괄적인 사업을 위해서 명칭을 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의 의견은?
 - 안 제3조 9호의 여성문화회관의 관리라는 부분을 보면 기존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이후 후속조치를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실제 건물의 출연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것에는 재단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 답 변 >

- 박덕순 여성가족국장
 - 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는것에 동의함. 보다 포괄적으로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전의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맞춰 일부 수정할 계획이 있음. 시의 재산출연은 현 여건에서는 어려우나 추후 출연을 고려하고 있음.
 -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것은 현재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상근이 가능하다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박승희, 신현환, 제갈원영, 박순남, 신동수, 강병수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6명)

조례안의 제명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4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5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6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7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8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9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0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1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2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3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4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5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6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7조 본문 중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8조 본문 중 “이사회는 대표이사과 이사로 구성하며, ”를 “이사회”로 한다.

안 제12조 본문 중 “설립목적 및 정관”을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으로 한다.

안 제17조 본문 중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로 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의 제명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4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5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6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7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8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9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0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1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2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3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4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5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6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17조 본문 중 “ 연구원”을“ 재단”으로 한다

안 제8조 본문 중 “이사회는 대표이사과 이사로 구성하며, ”를 “이사회
의”로 한다.

안 제12조 본문 중 “설립목적 및 정관”을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으로
한다.

안 제17조 본문 중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
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u>여성가족연구원의</u>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여성가족재단의</u> ----- -----.
제2조(설립) 인천광역시 <u>여성가족연구원</u> (이하 “ <u>연구원</u> ”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설립) 인천광역시 <u>여성가족재단</u> (이하 “ <u>재단</u> ”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u>연구원</u>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1. (생략)	제3조(사업) <u>재단</u>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1. (제정안과 같음)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u>연구원</u> 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u>재단</u> 의 ----- ----- ----- -----.
제5조(정관) ① <u>연구원</u>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u>연구원</u> 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u>재단</u> 의 ----- -----. 1. ~ 6. (제정안과 같음) ② <u>재단</u> 의 ----- -----.

제정안	수정안
제6조(임원 등) ① <u>연구원은</u>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생략) ③ 대표이사는 <u>연구원의</u>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임명한다. ④ ~ ⑤ (생략)	제6조(임원 등) ① <u>재단은</u> -----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u>재단의</u> ----- ----- ----- ----- -----. ④ ~ ⑤ (제정안과 같음)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u>연구원</u> 및 여성문화회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u>연구원의</u>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 <u>재단</u> ----- -----. ② ----- <u>재단의</u> ----- ----- -----.
제8조(이사회) <u>이사회</u>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u>연구원의</u>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u>이사회</u>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u>재단의</u>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직원) <u>연구원의</u>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9조(직원) <u>재단의</u>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기금 등) ① <u>연구원의</u>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u>연구원에</u>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u>연구원의</u>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연구원에</u>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등) ① <u>재단의</u> ----- ----- ----- <u>재단에</u> -----. ② ----- <u>재단의</u> ----- ----- ----- <u>재단에</u> ----- -----.
제11조(운영재원 등) <u>연구원의</u>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u>재단의</u> ----- ----- ----- -----.
제12조(수익사업) <u>연구원은</u> 설립목적 및 정관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u>연구원은</u>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 <u>재단은</u> 정관에 명시된 <u>설립목적의</u>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u>재단은</u> ----- --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u>연구원은</u>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u>연구원은</u>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u>재단은</u> -----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u>재단은</u> -----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u>연구원</u> 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u>연구원에</u>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 <u>재단의</u> ----- ----- ----- <u>재단에</u>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감독) ① 시장은 <u>연구원</u> 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u>연구원에</u>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감독) ①----- <u>재단의</u> ----- ----- -----. ②----- ----- <u>재단에</u> -----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u>연구원의</u>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u>연구원에</u>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 <u>재단의</u> ----- ----- <u>재단에</u> ----- -----.
제17조(운영규정) <u>연구원의</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u>이사장</u> 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운영규정) <u>재단의</u> ----- ----- ----- <u>시장의</u>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 및 여성문화회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이사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